예산.결산 자문 위원회 규정

제정: 1996. 4. 12
개정: 2007.12. 11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(이하"병원"이라 한다.)의 적정한 예산편성 및 결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이 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교육연구부장, 사무국장, 총무과장, 원무과장, 노조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병원장이 된다.(개정 2007.12.11)

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직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예산 편성의 기본방침
2. 주요 사업 계획
3. 자금 운용 예산(세입.세출) 계획
4. 결산 심의
5. 기타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정기예산 및 추가경정예산, 결산심의 회의로 구분한다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 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승인 절차) 위원회의 심의후 결정된 예산편성안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법인 이사회에 제출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12월11일부터 시행한다